

「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」 개정(안) 입안예고

-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9-187호, 2009. 11. 16 -

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 운용중인 축산물가공장·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중 공통으로 운용중인 선행요건프로그램 평가기준 등을 식육포장처리업 생산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분리하여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및 HACCP 고시 전문 일부 개정을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「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」 개정(안)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축산물 HACCP 고시 전문 개정

- (1) 정기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미보완시 부적합 사항으로 규정
- (2) HACCP 심볼의 색상 및 크기 등 사용 제한이 없도록 개정

나.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(안) 추가

- (1) 현행 축산물가공장·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축산물가공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로 변경
- (2) 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(안) 추가

다. 실시상황평가표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 및 서식 변경 등

- (1) 축산물영업장 중 S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식육판매업, 집유업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하여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
- (2) 축산물영업장(도축장 부터 축산물은 반입 까지)에 대하여 현황표의 시설 부분은 유무 판정이 아닌 시설 면적 등을 기재토록 변경
- (3) 도축장 부터 가축사육단계 까지 전업종 실시상황평가표에 지적사항 기재란 삽입

※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(www.nvrqs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